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9가단1433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판결 선고 2019.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5,636,484원 및 그 중 2,648,630,000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 4. 16.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9 .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창희

별지